

대법원 2014다33604 정직처분 등 무효확인 사건 보도자료

대법원 공보관실(02-3480-1451)

대법원(주심 대법관 김재형)은 2018. 2. 13. '2010년 KBS 언론노조 파업 관련 징계무효확인' 사건에서, ① 원고들의 이 사건 파업 참가 행위와 노보 발행 행위가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고 ②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징계처분이 징계 재량권을 남용하여 무효라고 본 원심의 판단을 수긍하고 **피고의 상고를 기각** 하였음(대법원 2018. 2. 13. 선고 2014다33604 판결)

1. 사안의 내용 및 소송 경과

가. 사안의 내용

- 피고(KBS)는, 전국언론노동조합 산하 KBS본부(이하 '본부노조') 소속인 원고들을 상대로 ① 2010. 7. 1.부터 같은 달 30.까지의 <임단협·공정방송 쟁취, 조직개약 저지> 파업(이하 '이 사건 파업') 참가, ② 위력에 의한 이사회 방해, ③ 노보 발행을 통한 명예훼손, ④ 근무시간 중 외부행사 참가 등을 통한 직장질서 문란 행위를 징계사유로 하여 각각 정직 2개월 ~ 정직 4개월의 징계처분을 하였음

나. 소송 경과

■ 제1심 (= 원고들 승소)

- 이 사건 징계사유 중 ① 이 사건 파업 참가 행위와 ② 위력에 의한 이사회 방해행위는 징계사유에 해당하나, ③ 노보 발행을 통한 명예훼손과 ④ 직장질서 문란 행위는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함
- 징계양정과 관련하여, 아래와 같은 사정 등을 종합하여 원고들에 대한

징계처분은 사회통념상 현저히 타당성을 결한 재량권의 남용으로서 무효라고 판단함

- ① 이 사건 징계처분은 피고가 유사한 사안으로 행한 징계처분에 비해 상대적으로 과중함
- ② 이 사건 파업과 이사회 방해 행위에 이르게 된 동기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음
- ③ 이 사건 파업은 목적 외에는 달리 파업의 주체, 절차 및 수단에서 위법하였던 것으로는 보이지 않음
- ④ 원고들에 대한 징계처분이 합리적인 이유 없이 파업 종료일로부터도 1년 6개월 가까이 지연된 시기에 이루어져 원고들로서는 노사화합 등의 차원에서 징계처분을 하지 않을 것이라는 기대를 가질 수 있었음

■ 원심 (= 피고의 항소 기각)

- 제1심과 달리, **징계사유** 중 ② 위력에 의한 이사회 방해행위와 ④ 직장질서 문란 행위는 **징계사유에 해당**하나, ① 이 사건 **파업 참가 행위**와 ③ **노보 발행**을 통한 명예훼손은 **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**고 판단함
- **징계양정**과 관련하여, 아래와 같은 사정 등을 종합하여 **원고들에 대한 징계처분**은 사회통념상 현저히 타당성을 결한 재량권의 남용으로서 무효라고 판단함
 - ① 이 사건 파업 참가 행위와 노보 발행을 통한 명예훼손을 징계사유에서 제외하고 원고들에 대한 징계양정의 당부를 판단해야 함
 - ② 징계사유로 인정된 이사회 방해행위와 직장질서 문란행위도 그 경위, 내용 등에 비추어 비위 정도가 무겁다고 보기 어려움
 - ③ 피고는 원고들의 이 사건 행위와 유사한 다른 사안에서는 감봉 또는 견책 등 보다 가벼운 징계처분을 하였음
 - ④ 피고가 합리적 이유 없이 징계절차를 지연함으로써 이 사건 징계처분이

적시에 이루어지지 못한 사정도 고려되어야 함

- ⑤ 원고들 중 다수는 이 사건 이전에 징계처분을 받은 적이 없고, 표창이나 포상을 받은 경력이 있음

2. 대법원의 판단

가. 사건의 쟁점

- ▣ 이 사건 파업 참가 행위가 징계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
- ▣ 피고와 그 사장에 관하여 일부 과장되거나 모욕적인 표현을 담고 있는 노보 발행 행위가 징계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
- ▣ 이 사건 징계처분이 재량권을 일탈·남용하여 무효인지 여부

나. 판결의 결과 : 아래와 같이 원심의 판단을 수긍하여 피고의 상고 기각

- ▣ 이 사건 파업 참가 행위가 징계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⇒ [소극](#)
 - 이 사건 파업은 주체, 목적, 시기와 절차, 수단과 방법에서 정당한 쟁의행위에 해당함
 - 이 사건 파업의 목적은 임금 인상, 방송의 공정성 보장을 위한 제도적 장치의 마련 등을 포함한 근로조건 개선에 있었다고 판단되어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됨 ⇒ 조직개편 반대를 단체교섭사항으로 삼았다거나 조직개편 문제가 단체교섭 결렬의 직접적 원인이 되었다고 보기 어려움
 - 쟁의행위에서 추구하는 목적이 여러 가지이고 그중 일부가 정당하지 못한 경우에는 주된 목적 또는 진정한 목적의 당부에 따라 쟁의목적의 당부를 판단하여야 함 ⇒ 설령 본부노조가 이 사건 파업의 목적 중 하나로 내세운 ‘조직 개악의 저지’가 조직개편을 반대하는 것이었다고 하더라도 조직개편 반대를 제외하더라도 단체협약에서 내세운 주장을 관철하기 위한 쟁의행위를 하였을 것으로 보임

- ▣ 노보 발행 행위가 징계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⇒ [소극](#)

- 원고들 중 일부가 발행에 관여한 이 사건 노보에 피고와 그 사장이던 김OO에 관하여 일부 과장되거나 모욕적인 표현이 사용된 부분이 있으나, 이를 발행한 주된 목적은 개인의 명예를 훼손하려는 데 있기보다는 조합원들의 단결을 유지·강화하고 조합원들의 근로조건과 경제적·사회적 지위를 향상시키려는 데 있었다고 봄이 타당함 ⇒ 이는 노동조합의 정당한 활동범위에 속하여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음

▣ 이 사건 징계처분이 재량권을 일탈·남용하여 무효인지 여부 ⇒ **적극**

- 위에서 본 원심의 판시이유와 같음

3. 판결의 의의

- ▣ '2010년 KBS 언론노조 파업 관련 징계무효확인' 사건에서, 이 사건 파업은 주된 목적이 임금 인상, 방송의 공정성 보장을 위한 제도적 장치의 마련 등을 포함한 근로조건 개선에 있다고 보아 정당한 쟁의행위에 해당하므로 원고들의 이 사건 파업 참가 행위가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, 나아가 일부 징계사유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징계처분이 징계재량권을 남용하여 무효라고 본 원심의 판단을 수긍하고 피고의 상고를 기각한 사안임